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40명(8급 4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40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자산운용팀, 디지털소통팀 및 국민취업지원기획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10. ~ 11.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중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40”을 “480”으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82”를 “642”로 한다.

별표 11의2 중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40”을 “480”으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82”를 “642”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6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고용노동부령 제13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20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26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고용노동부령 제33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23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고용노동부령 제33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0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40명(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0명)은 2026년 11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1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40명(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40명)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고용노동부령 제6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6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자산운용팀의 존속기한)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산운용팀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2조(자산운용팀의 존속기한) -- ----- ----- <u>2025년 12월 31일</u> -----.
고용노동부령 제23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3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 존속한다. ②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5년 12월 31일</u> ----- --. ② (현행과 같음)
고용노동부령 제30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0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국민취업지원기획 팀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 존 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 <u>2025년 12월 31일</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 사보	· · <u>440</u>	· · <u>480</u>	+40
· ·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 · <u>682</u>	· · <u>642</u>	-40
· ·	· ·	· ·	

[별표 11의2]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

(고용노동부령 제38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 사보	<u>440</u>	<u>480</u>	+40
·	·	·	
·	·	·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u>682</u>	<u>642</u>	-40
·	·	·	
·	·	·	